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 _Vol.12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7 ~ 2022.2.13) -

February 14,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ble>
<tr><th>부처</th><th>내용</th><th>일시</th></tr>
<tr><td>기획
재정부</td><td>

•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부범위 규정**

< **시행령**(조특령 § 21④) **개정내용** >

◇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table>
<tr><th rowspan="2">세액공제율(%)</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3</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 사업화 시설</td><td>3</td><td>5</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6</td><td>8</td><td>16</td><td>4</td></tr>
</table>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세부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td><td>2022-
02-09</td></tr>
</table>

부처	내용	일시

분 야	구 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반도체	메모리	-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시설
	시스템	- **SoC 반도체 파운드리 7nm이하급** 제조시설 -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등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배터리	상용배터리	-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시설 -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 등
	차세대 이차전지	-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소재·부품	-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및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시설 등
백신	개발·생산	-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원·부자재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제조시설

②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현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

– (개정안) 탄소중립 분야 신설,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 추가(신설 28, 삭제 2)하여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3%·10%)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3%·5%·12%) 적용

분 야	주요 추가 시설
탄소 중립	▶그린수소·블루수소·부생수소 생산시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 ▶수소가스 유동환원설비 및 환원철을 용융한 제철시설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양생시설 ▶전기저항 가열방식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한 석유화학 기초원료 제조시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저감시설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 등 히트펌프 시스템 제조시설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시스템 제조시설 등
미래차	▶고효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시스템 제조시설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장비 및 품질분석 장비·부품 제조시설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장품 소재 등 생산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시설
자원 순환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을 거쳐 재생원료 등을 제조하는 시설 ▶생분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하는 시설 ▶플라스틱 오염물질 발생 저감 포장재 생산시설
핵심 소재	▶중희토 함유량을 50% 절감하여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시설 ▶요소수, 중조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하는 핵심소재 제조시설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개 부처 직할 출연연을 대상으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함 주요 2023년도 투자방향의 기본 방향(안)으로는 ①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및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 –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및 미래 공급망 창출 지원 ②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바이오헬스 분야 중점 지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강화 ③ **대전환의 시대 선도**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고도화를 통한 全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 촉진 – 기술혁신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견인 ④ **포용적 혁신역량 강화** –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 – 우수 연구성과 기반 창업·사업화를 촉진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	2022- 02-09
	•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경제시대 정보보호 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 (인공지능 보안) 사이버위협이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보안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지능화될 필요가 있으며, 세계 인공지능 보안시장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 (비대면 보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교육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 속 비대면 서비스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무인점포 등 신규비대면 서비스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디지털·비대면 서비스에 보안을 적용함 – (융합 보안)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 환경에서의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2022- 02-10

부처	내용	일시
	② **세계 일류 정보보호기업 육성** – (신성장 기술·제품 사업화)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성장을 위해 첨단 정보보호기술에 기반한 선도 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정보보호산업법」제18조)으로 지정하여 판로개척을 후속 지원 – (인수합병 활성화 지원) 정보보호 벤처기업이 기업 간 협업 확대, 인수합병(M&A), 투자유치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 (해외진출) 효과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미국, 동남아, 중남미 등 권역별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고, 5대 해외 거점(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미주)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함 * (예시) 미국은 CCTV 등 영상보안 , 동남아는 비대면서비스 보안, 중남미는 국가안보 프로젝트 등 ③ **정보보호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생태계 확충** – (정보보호공시 의무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21.12.9.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호되는 동시에 정보보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정보보호인증 고도화) 사물인터넷(IoT)기기 해킹에 대응하여 열화상 카메라, 도어락, 드론, 의료용 엑스레이(X-ray) 등 다양한 분야로 정보보호인증을 확대해 정보통신 기기의 보안 내재화 기반을 마련함 – (중소기업·지역 지원) 중소기업·지역의 사이버 보안 안전망 확충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분야 정보보호 신규 수요 창출 ④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경쟁력 확보** – 사이버보안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반드시 우리 기술과 기업을 통해 확보해야하는 분야임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 과기장관회의 ('21.12.22)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u>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u>**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2/18까지 갖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감축분야 (316억원) : 친환경 공정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 –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 (60억원) : 사업장 전체 또는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 * (지원한도) 사업장별 최대 30억원(연간 15억원), (지원비율) 중소 최대 50%, 중견 최대 40%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236억원) :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온실가스,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한도) 사업장별 최대1.2억원 이내, (지원비율) 중소 최대 75%, 중견 최대 50%, (지원방식) 사업신청 → 현장 공정진단·사업계획서 평가 → 맞춤형 설비보급·공정개선 –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청정공정 확산사업) (20억원) :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영천시, 안산시, 장흥군 ** (예시) 생산공정 단열기술, 공정온도 제어기술, 고주파 유도 가열기술 등 ② **적응분야 (27억원) :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 –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27억원)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 지원 ③ **기반분야 (1,500억원) : 선제적 투자 기업 지원 및 신산업 육성** –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1,500억원) :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공정·제품 개발(R&D)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한도) 사업장별 100억원 이내 / 년 융자, 최대 500억원 이내(R&D 투자 100억원 이내), (지원비율) 중소 100%, 중견 90%, 대 50%, (융자금리) 1~2% 이내, (대출기간/상환조건) 최대 10년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2022- 02-07

부처	내용	일시
고용 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 ②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 (현장점검의 날)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입)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 *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 (점검·연계감독)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 확대 – (기획감독)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 확대 ③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 (본사·원청 감독)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 – (사후감독)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 – (특별감독)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 ④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 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임 –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 안내 –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 –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 등	2022- 02-0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법무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5.9. 시행 예정)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전자어음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2-02-08
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2.8. 시행)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고 천연가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 천연가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천연가스 수급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및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등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천연가스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는 가스수급계획 이행실적, 천연가스 수입계획 및 자가소비 외 천연가스 처분 현황 등을,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는 천연가스 수급실적,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시설의 이용현황 및 천연가스 처분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022-02-09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2.8. 시행) 폐기물 발생량과 조성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과 규모 이상인 산업단지나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매립시설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매립시설 외에 소각시설이나 폐기물을 열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하여 폐기물 매립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022-02-0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2.11. 시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문구에 대하여 국민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광고에 표시하는 문구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등을 알 수 있도록 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등을 추가하는 한편,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를 정하고 이를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살생물제품에 대하여는 광고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를 늦추는 특례를 부칙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2-10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2.11. 시행) 그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8.10. 공포, 2022.2.11. 시행)됨.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원룸형 주택"의 명칭을 "소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높이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세 개 이하의 침실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2-11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 재정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며,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부금영수증 포함 사항 명확화 (안 제19조의3)** – 기부법인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주요 사항,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단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소재지를 추가로 포함할수 있음을 규정함 ②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 규정 (안 제42조의6)** –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규정함 ※ 의견 제시기간 : 2/10(목)~2/24(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2022- 02-10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면제 대상 보상금수령단체를 정하고,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치료제를 확대하며, 간편사업등록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면세 대상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구체화 (안 제34조제4항 신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정함 ②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확대 (안 별표 2의2 제2호)** –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022- 02-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 재정부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표준인증 취소사유 규정 (안 제50조 제5항 제2호 가~다목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④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방법 규정 (안 제66조의2, 안 별지제37호의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표준인증 취소사유를 정함 – 간편사업등록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등을 정함 ※ 의견 제시기간 : 2/10(목)~2/24(목)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규정과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를 위해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의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제외함 (안 제1조제2항) ②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변경함 (안 별지 제 22호의2) ※ 의견 제시기간 : 2/10(목)~2/24(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2022- 02-10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권 등의 매매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 02-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2/10(목)~2/24(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로 제출	
기획 재정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등 기존에 국세청장 고시로 규정하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직전 주조연도 주류 반출량이 일정수량 미만인 경우 등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9조제2항 신설) ② 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및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서식 신설 (안 제1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10(목)~2/24(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2022- 02-10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대상을 규정하는 창업범위를 연쇄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확대하고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창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1항)** – (지분율 조정) 연쇄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인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주식지분율 제한을 (현행) 30% 이상 → (개정) 50% 초과로 상향 (제4·5호) – (과점주주 사업개시) 기존 법인의 최대주주(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창업이 아님으로 창업여부 판단 기준에 추가 (제6호 신설)	2022- 02-1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창업기업 범위 (안 제3조제2항 신설)** –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규정 신설 ③ **부담금 면제 대상인 지식서비스업 범위 (안 제10조)** –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분류 기준 총 29개 업종 설정 ④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안 제13조 신설)**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 ⑤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 (안 제40조 신설)** – 참여제한 사유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에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안 제4조)** – 시행령에서 범죄경력자료 조회신청서 및 회신서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 ②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안 제5조)** –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 ③ **공장설립 계획의 변경신고 사항 (안 제7조)** – 법에 공장설립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신설하고 시행규칙에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변경한 경우 등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④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안 제8조)** – 법에 공장설립을 완료하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규칙에 완료 신고기간을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완료 신고기간을 2개월로 규정 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안 제10조)** –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침을 운영중이나 법령상 지정 신청 관련 위임규정이 없어 시행규칙에 고시를 운용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11(금)~3/2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 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11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됨 이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 기관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지정하여 동의의결 이행감독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57조의2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10(목)~3/22(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로 제출	2022-02-10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파기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와 제재의 실효성이 약한 경우 과징금·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함께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기술 특성에 따른 파기 방법 규정 개선 (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추가함 ② **출연사업 위탁근거 정비 (안 제62조제3항 개정)**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전문기관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③ **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정비 (안 별표1·별표1의3·별표1의5·별표2 개정)** –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산정절차에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일부 법정고지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견 제시기간 : 2/9(수)~3/2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	2022-02-09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0인)」 최근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소액주주의 알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또한 코로나시대 이후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인권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기업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에 대해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47조 제1항제1호 개정 및 제44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12호까지 신설)	2022-02-0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다른 법률에서도 예외조항을 두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다는 점, 해당 사업장들은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1·2차 협력업체에 해당하기보다는 3·4차 협력업체 내지는 도급관계가 없는 독립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적용이 제외되었음 그러나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사고 중 35.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현행법의 적용제외규정이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조)	2022-02-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최근 미·중 간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기술블록화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제외하면 패권경쟁의 중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이 부족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체계가 개별 이슈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발전과 국가안보·외교·기술주권 확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토대로 국가적 지원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조기 개발·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②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설치하고,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를 설치함 (안 제8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④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안 제14조 및 제16조) ⑤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⑥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인력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허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⑦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 및 제36조) ⑧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2022-02-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1인)」** 최근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는 특정 이용자의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은 각 이용자가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가 수집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선제적으로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3 신설 등)	2022-02-08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사물인터넷·모바일·5G·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성숙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기업의 생존·발전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발된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한정된 의료자원 등이 국민건강과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의 가속화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지원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방,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공지능·데이터 등의 이종 산업과 서비스 간 결합, 제품의 서비스화 또는 서비스의 제품화와 같은 융합형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산업융합 촉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한계가 있음	2022-02-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또한 고속 성장하는 미래 유망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수요창출 및 사업전환 등 각 부문 간 연계·협력과 정책 추진 체계, 지원제도 미비 등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애로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하여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산업 전반에서 첨단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민간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 지원과 발전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소프트웨어·시스템·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규정함 (안 제2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④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및 제23조) ⑧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자 등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2/17(목) ~ 2/18(금)	「제76차 UN 총회」 의원회의 -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정치적 지원 및 포용적 대응 구축	유엔본부
	2/18(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6호 발간	
국회도서관	2/15(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4호 발간 - 전자감독제도 관련 미국, 독일, 프랑스 입법례	
	2/15(화)	「현안입법 알리기」 - 재난안전 관련 산업 지원의 법적근거	
입법조사처	2/14(월)	「이슈와 논점」 제1925호 발간 -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	
	2/15(화)	「외국 입법·정책 분석」 제19호 발간 -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2/16(수) 14:00	「전문가 간담회」 - 초고령사회 대응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현황과 향후 과제 발굴 - 한은정 센터장 (건강보험연구원)	온라인
	2/16(수) 15:00	「전문가 간담회」 - 공공기여의 개념과 운용방안 - 한은정 센터장 (건강보험연구원)	온라인
	2/17(목) 15:00	「전문가 간담회」 - 제3차 차기정부 교육정책 이슈와 과제 연속간담회 - 송기창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온라인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14(월) 10:00	2022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 - 신진 청년 학자들의 진단과 제언	태영호 의원실, 나라사랑국민회의	국회도서관 강당
2/14(월) 14:30	제4차 자유민주통일포럼 -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한·미 공조 시스템 점검	김성원 의원실,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How's 카페
2/16(수) 10:00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	윤영찬,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21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2/11(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5호 발간	
국회도서관	2/8(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3호 발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독일 입법례	
	2/10(목)	「현안, 외국에선?」 제29호 발간 - 일본의 청년 지원정책: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조사처	2/7(월)	「이슈와 논점」 제1922호 발간 - 국회의원 임기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	
미래연구원	2/7(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8호 발간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7(월) 14:00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및 인프라 강화 방안 - 한반도평화협력재단 설립을 중심으로	김영호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9(수) 14:00	2022 외교안보 컨퍼런스 : 경제안보	조태용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0(목) 14:00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	이광재, 강병원 의원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2/11(금) 14:00	2022 외교안보 컨퍼런스 : 인간안보 vs 국가안보	조태용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금) 10:00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 데이터 산업활용과 규제의 조화	김희곤, 진선미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1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나인선** | 소속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